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 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법¹⁾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가. 정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 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²⁾
 -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2) 의무이행 대체수단의 정비(‘13.6.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법 제14조, 2014.5.20. 개정)
- 종전의 보육수당은 각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만0세(430천원), 만1세(378천원), 만2세(313천원), 만3~5세(220천원) (종일반 기준)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 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 *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
 -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 '12~'14년 0~5세 평균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이용 아동수
 -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

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 고
고 용 노 동 부	설 치 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3억원 (공동 6억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어린이집 80%,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집 9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 소요금액의 90%지원 (시설매입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40%)
			교재교구비	5천만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어린이집 80%,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 집은 90%) - 교체 시 3년 단위로 3천만원 지원
	용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운 영 비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120만원)	- 대상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원 • 현원 40명~59명 : 월 280만원 • 현원 60명~79명 : 월 360만원 • 현원 80명~99명 : 월 440만원 •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로 문의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7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p>「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 <u>취득세,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18.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Q&A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계선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위치에 있으면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ex. 복지부(이름동), 보육정책국(어진동)인 경우 하나의 단위사업장)

Q3 단기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가 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월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여러 동의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포함하여 단위사업장으로 보나요?

A4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는 형태이므로, 캠퍼스 내 흩어져 있는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

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관련

Q1 어린이집 보육 정원 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최소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1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속 자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보육사업안내6pg)

Q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법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Q3 여러 사업장 공동설치의 경우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사업장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위탁보육 관련

Q1 위탁보육의 의무이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려면 보육수요인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보육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Q2 위탁보육하고자 하나, 보육수요 결과 실제 위탁보육 수요가 없을 때 이를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중 0~5세 영유아 아동이 전혀 없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단공표심의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명절차 등에서 소명하여 인정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Q3 유치원에도 위탁보육을 할 수 있나요?

A3 유치원과는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사업장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지 않은 유치원 재원 인원은 위탁보육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재원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위탁보육비용을 30%로 낮게 설정한 것임

Q4 위탁보육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위탁계약서를 통해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및 사업장이 위탁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위탁보육으로의 의무이행이 인정됩니다.

Q5 위탁보육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A5 위탁보육 어린이집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다니고 있거나 다니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모두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6 위탁보육계약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6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탁보육 계약서 양식(보육사업안내 부록 첨부)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7 위탁보육을 어린이집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회계 상 인건비 외 지출이 어렵다고 기피합니다.

A7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을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으나('15) 16년부터 잔액을 운영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Q8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는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나요?

A8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Q9 맞벌이 부모로서 아버지는 A사업장, 어머니는 B사업장에 근무하며 모두 의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양쪽 사업장에서 한 아이에게 동시에 위탁보육계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A9 양 쪽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 지급 방식 문의

- 반드시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적을 때 차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 환불할 필요 없이 지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클 때 어린이집은 차액을 어찌 충당해야 하나요? → 차액만큼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시행 시기 관련

Q1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16.1~ 부과 가능합니다. 원칙은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여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결과를 참조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Q2 '16년중에는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설치를 계획중이며, '17년 초 준공하여 하반기 개원예정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이르러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득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
 -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가. 정 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가. 주요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 1)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신뢰성 극대화
 -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확보
 - 선정기준 및 그 절차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2)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3) 운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 1) 적용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설립 예정인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최초 선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12.2.5 시행)의 규정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에 의하거나 재위탁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가능

2) 선정시기

-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 완료
 -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 위탁체 선정가능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 횟수 제한 가능
-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공개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는 공개

4)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

5)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 인건비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이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7) 선정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영유아보육법」 제6조 참조)

8)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자료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 추134판결>

라. 세부지침

1) 위탁체(신규·변경) 선정

- 선정시기
 -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기존시설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
- 위탁체모집
 - 공고 : 일간지 또는 시·군·구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아이사랑포털 등 관련기관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위탁운영 조건, 사업설명회 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장소 및 기간),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 공개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현장설명 : 필요시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접수기간 : 접수 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심사기준 :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

2) 재위탁 심사

- 심사시기 :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 영 체			비 고
		법 인	단 체	개 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시설운영 기간동안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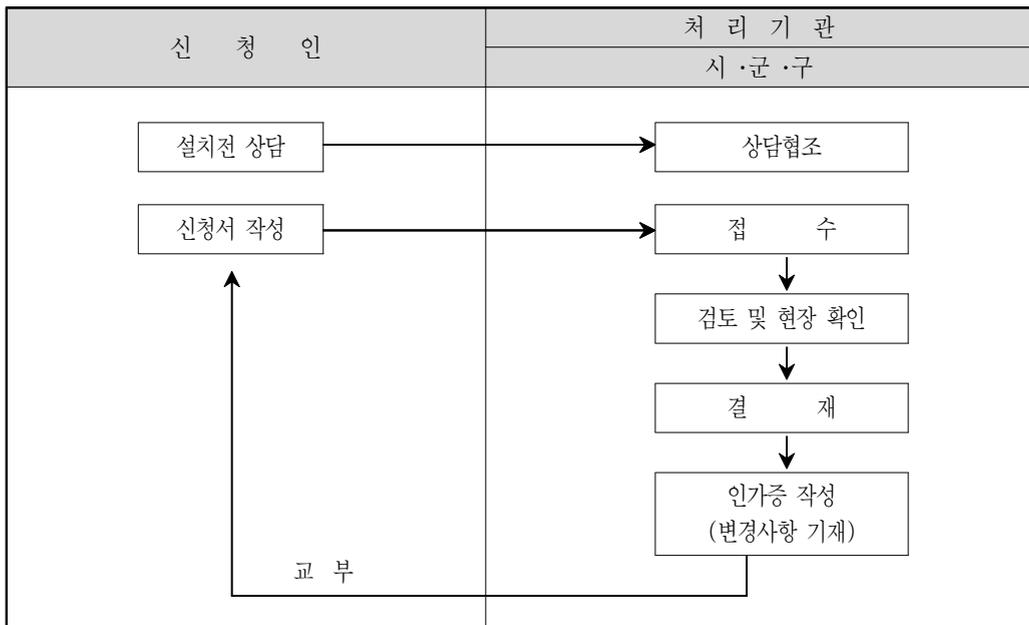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 원칙

마.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선정관리 기준 등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 ※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가. 인가절차

○ 신규(변경)인가



나.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2)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3)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 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다. 인가 시 유의사항

☞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 및 증·개축 시설에 적용함

☞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3)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4)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2)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 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 법령, 소방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 “3-가-마)” 및 “사)”의 규정에 의한 옥외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1.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시행규칙 [별표1] 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인 되도록 함
 - ※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중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인근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국토부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 기타 경매 시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인근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특기사항에 명시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있게 배치 되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예시 인가제한 판단 기준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을 경우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 인증율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율 미만인 경우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 설정)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설치자의 자격을 일정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지역 거주자로 제한

-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예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가제한 지역에서 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허용

※ 예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하면서 동일 인가권역 내 민간·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 등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

-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정원 허용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 허용(※예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야 함

※ 예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① 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② 이용권역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③ 의무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
 - ※ 예시) 건물의 용도가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 전용으로 건축한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의하여 용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음에도 인가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 ○○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9.5%인 경우, 전국 어린이집평균 정원충족률(82.2%, '10.12.31.기준)의 초과율 82.2 ~ 89.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 허용 가능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제재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감원 제외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감원 시 보육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 감원 처리하며, 감원요인으로 인한 사유로 영유아를 강제 퇴소 조치 불가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 ※ 지침 시행 이후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 ※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결격사유 조희

○ 2015.1.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함
 - ※ 시행규칙 제5조의2(15.1.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 (변경방법) 원장 임면권자의 임면신청 및 시·군·구 승인으로 원장 변경
 - ※ (임면권자) 국공립-시·군·구청장, 부모협동-조합대표자, 기타-어린이집대표자
 - ※ 기존의 원장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불필요
- (인가증 교부) 어린이집 인가증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
 - ※ 인가증상 출력 교부일이 인가일자가 아님에 유의

<보육통합시스템 변경 방법>

- 원장 임면신청서 제출(대표자, 방문신청) 및 전임 원장 면직신청(시스템) → 면직 승인 및 원장 정보 변경 입력(시·군·구) → 시스템 가입 신청(신임원장) → 가입승인(시·군·구) → 임면신청(신임원장) → 임면 승인

☑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장애아	기타		공동주택(관리동)	기타			
종류 변경 가능 여부	X	X	X	X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기타)	X	○	△	X	X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형 변경 불가
 - 유형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유형 변경 판단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바 타 유형으로의 변경 불가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당해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타 유형으로의 변경 불가
 - 기타 (종교단체 등이 설치한)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정원 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민간)은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는 바 주민공동시설을 벗어난 곳으로의 소재지 변경 불가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 민간어린이집 매입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절차 진행
 - 가정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으로의 유형변경은 정원 증원과 용도변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변경 불가 원칙. 다만, 정원 증원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4) 2005.1.29일 이전 설치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 불가

○ 유의사항

-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 다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어린이집 인가신청시 대표자(설치자)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 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 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의 원칙의 취지 상 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부부 포함)한 경우 공동 대표 인정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예시

☐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 ‘어린이집 이용권역’이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권역 설정 가능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 어린이집 이용률

- 이용권역 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B)의 비율 (B/A)을 의미

☐ 기타기준

-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아동 수 및 취원율 등을 고려
-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 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계획 반영
-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반영
- 법령에 의하여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을 파악하여 반영
*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

☐ 인가제한 판단기준 적용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82%) 또는 시도 평균 미만인 경우 인가제한 가능
* 이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 및 연령별 정원충족률 고려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 어린이집 정원은 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② 보육실 면적 ③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면적기준 시설규모	어린이집 전용 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산정기준
50인 미만 시설	영유아 1인당 4.29㎡	영유아 1인당 2.64㎡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50인 이상 시설			영유아 1인당 3.5㎡ 원칙	

※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설치 전 상담 시 지도

예 교사 1인이 담당하는 5세아 1반은 최대 20명이므로, 보육실 면적도 이에 준하여 배치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 :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산정 제외 : 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 : 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구분하여 산정

③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 : 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 면적산정은 신청면적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대조하여 면적 인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되 보육과 관계없는(가구 등)시설물은 인가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 가능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협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 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 : 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 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은 1층 또는 건물전체(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

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시설(시행규칙 별표1)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 시행규칙 제9조<별표 1>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그 위층에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시행규칙 별표1 3.가.3). 가) ①.(iv))

- 2005. 1. 29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또는 2층과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으로 변경인가 하는 경우 기존 층수에서 운영 가능(여성부령 제14호, 2005.1.29, 부칙 제2조)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i)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선큰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선큰(Sunken) : 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 안목치수 : 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보육교직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 있어야 함.
 - ※ 전담영양사 및 전담조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밀폐 가능한 냉온조절 운반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조리된 음식물의 오염 방지
-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은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
 - ※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 ☞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 변경 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 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가)① 중 (i)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마) 놀이기구 설치기준” 참조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세부기준 참조
-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대체놀이터 활용 시 주 3회, 매회 30분 이상 실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의 면적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정 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유하는 시설은 제외

※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예 : 정원 51명 중 12개월 미만이 3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 놀이터 면적은 75㎡(= 48 × 0.45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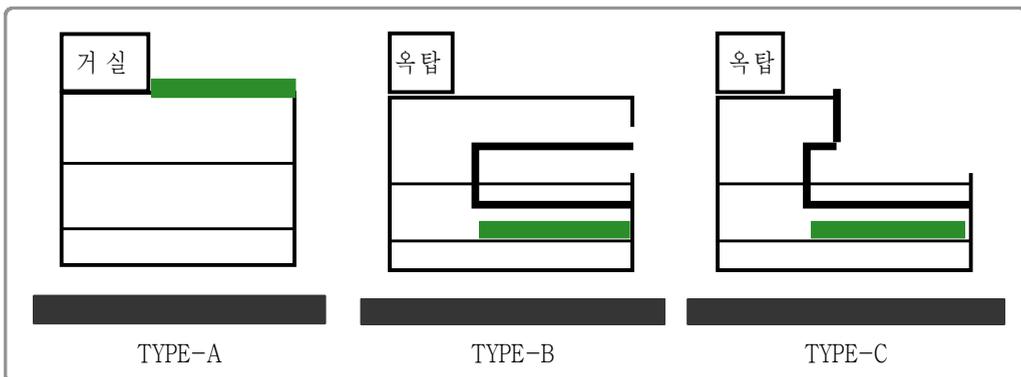
다. 놀이터 종류

-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①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②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 ③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 예시 ▣

※ TYPE-A : 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B·C : 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 옥상놀이터 유형 : 예시 ■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①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②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③ 대체놀이터 종류 : 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 인가경합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전부 또는 일부) 및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인가
 -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 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① 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면적은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② 합산되는 놀이터는 최소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 ③ 옥외놀이터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어린이집 면적에서 제외함
- 옥내 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공통 기준
 - ①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 ②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

※ 예) 5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가능, 6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불가

※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정기점검 대상)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다만, 비상재해 시 영유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5층 이하로 설치 유도

- ③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cm 이내, 계단의 유효 높이는 15cm 이내를 권장함

－ 실내놀이터 세부기준

- ① 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명·채광·환기·온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 ② 어린이집 2층과 3층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③ 어린이집 4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동일 층에 실내놀이터 입구로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 보행거리가 50m 이내에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있는 경우

－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 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②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부식,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mm 이하로 설치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 이상의 강화유리,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 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 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 옥내중간 놀이터 세부기준 ③, ④ 참고

- ③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않음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 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 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 : 보행거리 → 직선거리, 100m → 200m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육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 놀이기구 종류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 ②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③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예) 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설치로 인정
 - ④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 ②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뿔뿔,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현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 ③ 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 ①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기타 놀이도구(권장) :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등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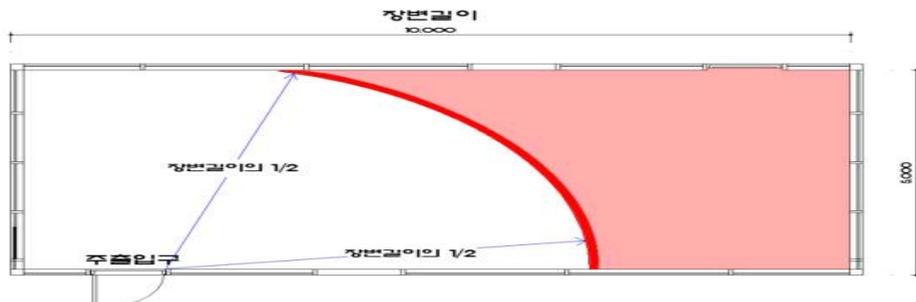
- ☞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함
-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강화통유리 설치 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 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7.3)

-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 다만,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노유자시설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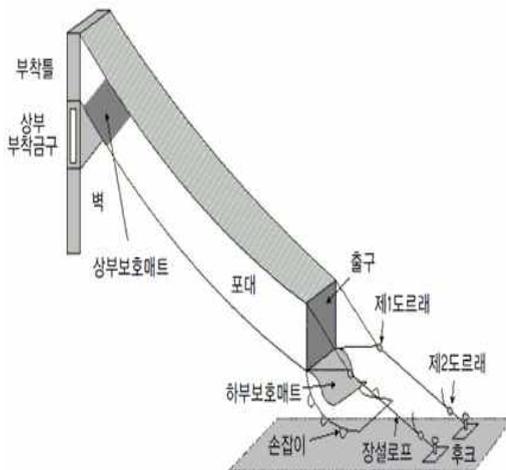
※ 내부 직통계단 : 건물의 어떤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또한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4년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 트랩 등 불인정

※ 2·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 인가 시 구조대 각도를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하강식 경사구조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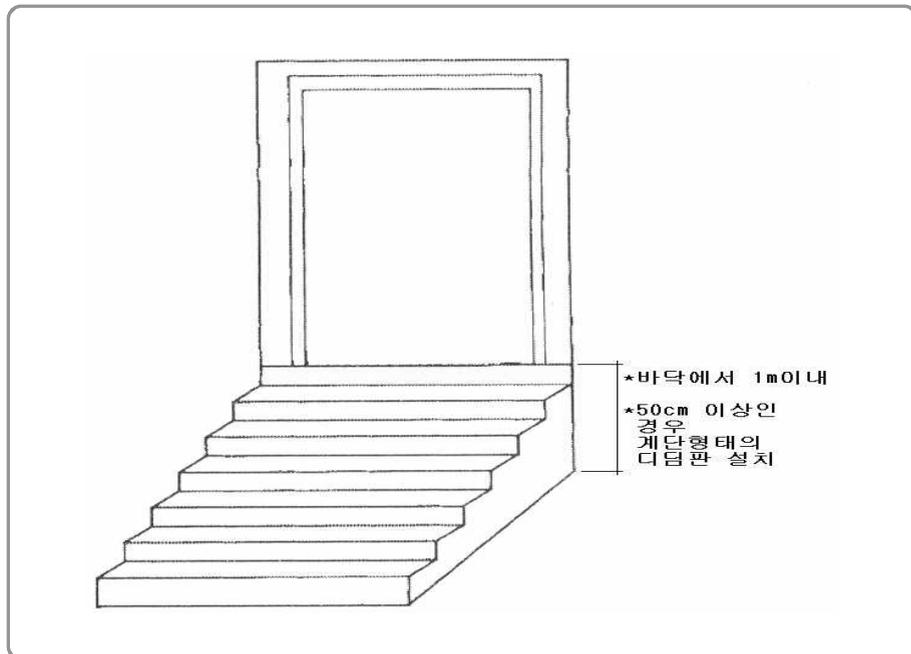
하강식 경사구조대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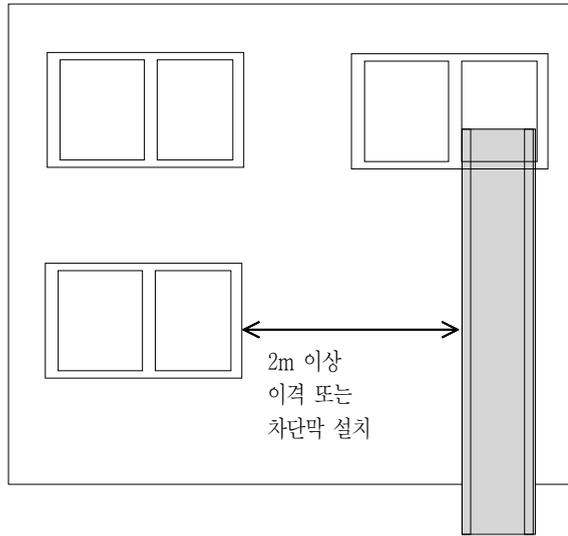
-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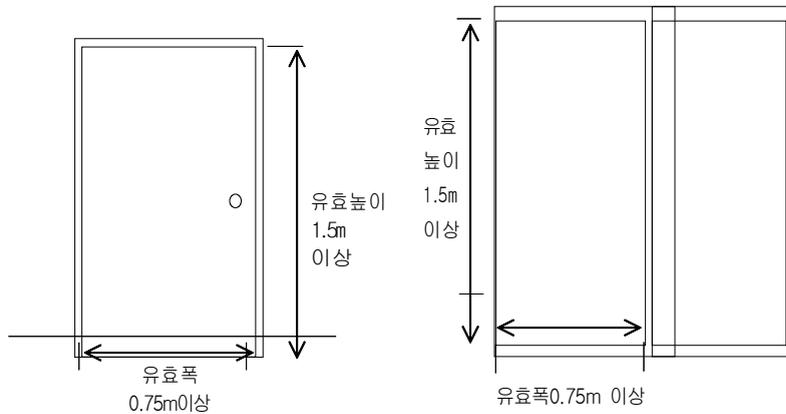
-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고정식 원칙)
-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cm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cm 이상, 유효높이 16cm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 2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거나, 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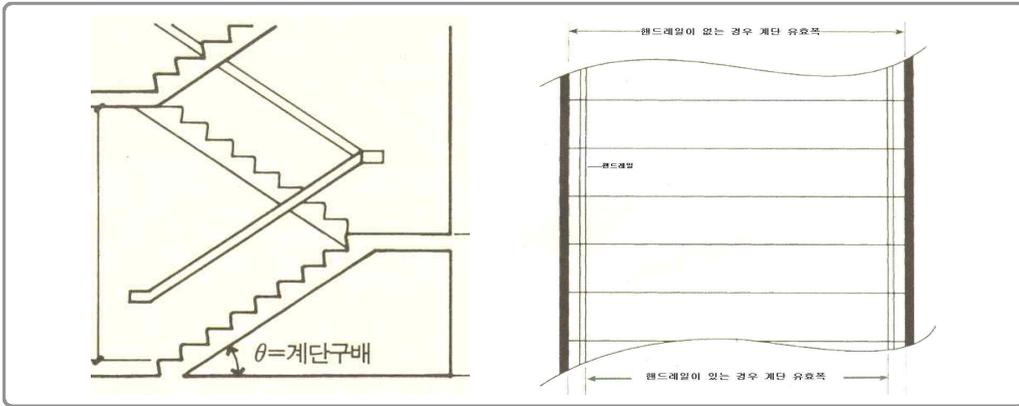
-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 ⑨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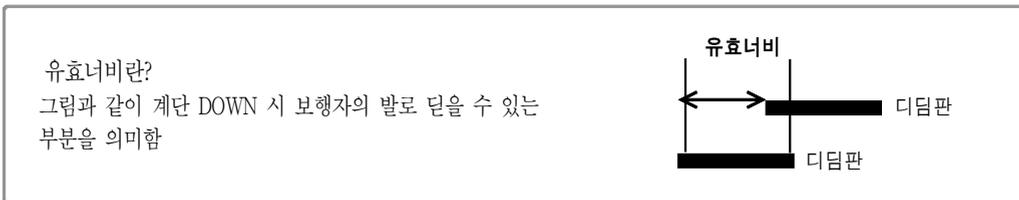
- ①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90cm 이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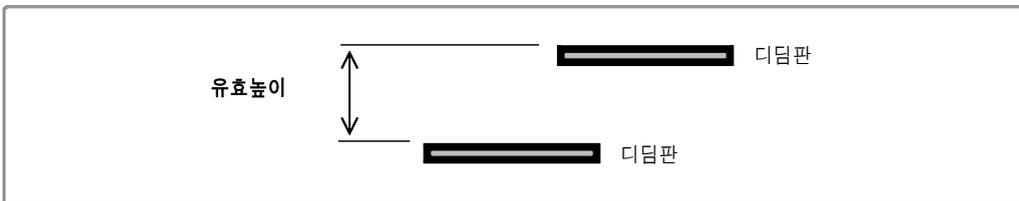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함



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⑤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 세부기준

- ①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 ②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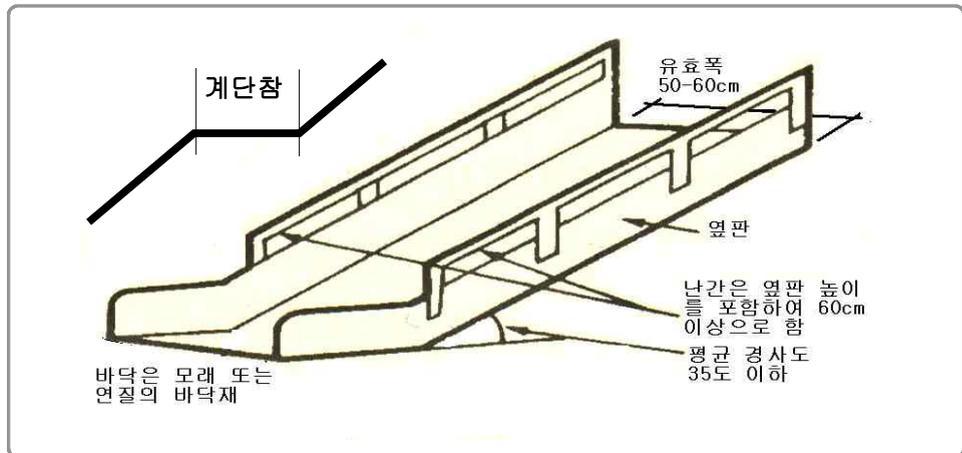
※ 직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 반원통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 ③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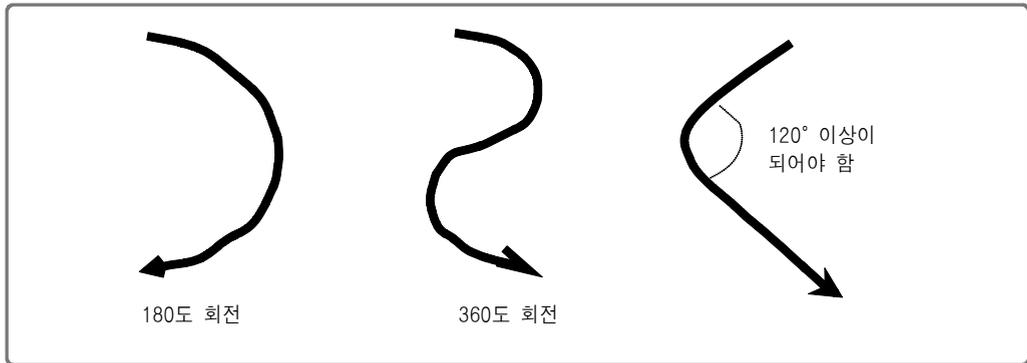
④ (직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 6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 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cm 범위로 함
- 미끄럼대의 활주관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관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초과 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관의 평균경사도 : 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 ⑤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⑥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 ⑦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m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 하여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 ⑧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품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인가 관련 법령

1 영유아보육법령

- 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법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법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 법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 법 제16조(결격사유)
- 법 제20조(결격사유)
- 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법 제39조(세제지원)
- 법 제45조의3(행정재채처분효과의 승계)
- 시행령 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시행령 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시행규칙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 기타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건축법」
 - i) 건축법 제2조(정의)
 - ii)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호, 제2호, 제11호
 - iii)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iv)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 제4항 내지 제5항
 - v)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2항
 - vi)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vii)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1항
 - viii)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ix)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
 - i) 주택법 제2조(정의) : 제9호

- ii)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iii)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 i) 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ii)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i) 법률 제2조(정의)
 - ii)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 iii)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 iv) 법률 제9조(특정대상소방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제1항
 - v) 시행령 제15조(특정대상소방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
 - vi)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1항 내지 제3항
 - vii)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제3호
 - viii)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 i) 법 제15조(시공감리 등)
 - ii)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 iii)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i) 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ii) 시행규칙 제29조(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 i) 법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ii) 시행규칙 제3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 「도로교통법」
 - i) 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ii)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 iii) 법 제2조(정의) : 제1호 내지 4호, 제21호
 - iv) 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제1항 내지 제2항
 - v) 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1항 내지 제4항
 - vi)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 제1호 내지 제4호
 - vii)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 viii)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 제1항 내지 제4항
 - ix)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 제1호 내지 제3호
 - x) 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i) 규칙 제2조(정의)
 - ii)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iii) 규칙 제25조 내지 제29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106조

• 「방송법」

- i) 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ii)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 i) 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개별소비세법」

- i) 법 제18조(조건부 면세) : 제1항의 제6호, 제12호

• 「지방자치법」

- i) 법 제144조(공공시설) : 제1항 내지 제3항

• 「식품위생법」

- i) 법 제2조(정의) : 제9호
- ii) 법 제88조(집단급식소)
- iii)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iv)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v) 법 제51조(조리사)
- vi) 시행령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vii) 법 제52조(영양사)
- viii) 시행령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i) 법률 제3조(정의)
- ii)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iii)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iv)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v)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 vi)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 vii)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 viii)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 ix)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i) 법률 제7조(대상시설)
- ii)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 iii)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iv)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i) 법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ii) 법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iii)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인정보보호법」
- 「석면안전관리법」
 - i) 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ii) 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iii) 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 iv)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기타 건축·주택·소방 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대법원 판례
 - i) 1994. 10. 15. 선고. 94누 2213 판결
 - ii) 2008. 4. 24. 선고. 2007두 25060 판결

-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i) 안건번호 05-0164
 - ii) 안건번호 08-0232
 - iii) 안건번호 08-0029